

【 12 】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2000. 8. 8

제출자 양주군수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3호의 보건소 업무를 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의거 보건소의 업무중 의료인에게 진료업무 대행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
- 나. 진료업무 대행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2항)
- 다. 진료업무 대행시 업무대행경비 지급의 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항)
- 라. 업무대행자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3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군수는 보건소의 업무중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의 요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신과·한방과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며, 업무대행 경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군수는 이 조례에 의거 계약 체결된 진료업무의 대 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36編 保健・醫事 第1章 行政組織・通則 地域保健法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 關聯機關・團體등에 대하여 資料提供 및 協力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機關・團體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調整을 권고할 수 있다.

第4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①地域保健醫療計劃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保健醫療需要 測定
2. 保健醫療에 관한 長短期 供給對策
3. 人力・組織・財政등 保健醫療資源의 調達 및 관리
4. 保健醫療의 傳達體系
5. 地域保健醫療에 관련된 統計의 審集 및 정리

②第1項에서 規定한 것외에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 關聯機關・團體등에 대하여 人力・技術 및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第6條 (地域保健醫療計劃 施行結果의 評價)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 또는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結果를 評價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필요한 경우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第7條 (保健所의 設置) 保健所(保健醫療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8條 (保健醫療院) ①保健所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病院의 요건을 갖춘 保健所는 保健醫療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削除 <99·2·8>

第9條 (保健所의 業務) 保健所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서 행하여지

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管掌한다.

1. 國民健康增進・保健教育・口腔健康 및 營養改善事業
2. 傳染病의 豫防・ 관리 및 診療
3.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事業
4. 老人保健事業
5. 公衆衛生 및 食品衛生
6. 醫療人 및 醫療機關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7. 醫療技士・醫務記錄士 및 眼鏡士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8. 應急醫療에 관한 사항
9. 農漁村等保健醫療를 위한特別措置法에 의한 公衆保健醫師・保健診療員 및 保健診療所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10. 藥事에 관한 사항과 麻藥・向精神性醫藥品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精神保健에 관한 사항
12. 家庭・社會福祉施設등을 訪問하여 행하는 保健醫療事業
13. 地域住民에 대한 診療, 健康診斷 및 慢性退行性疾患등의 疾病管理에 관한 사항
14. 保健에 관한 實驗 또는 檢查에 관한 사항
15. 障碍人の 再活事業 기타 保健福利部令이 정하는 社會福祉事業
16. 기타 地域住民의 保健醫療의 향상・增進 및 이를 위한 研究등에 관한 사업

第10條 (保健支所의 設置) 地方自治團體는 保健所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保健所의 支所(이하 “保健支所”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第11條 (保健所의 組織) 保健所의 組織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地方自治法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專門人力의 適正配置等) ①保健所에는 所長과 第9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免許・資格 또는 專門知識을 가진 人力(이하 “專門人力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市・道知事은 保健所의 專門人力등의 適正配置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方公務員法 第30條의 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所간에 專門人力등의 交流를 할 수 있다.

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99·2·8)

第19條 (費用의 보조) ①國家와 市・道는 保健所의 設置와 운영에 필요한 費用 및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庫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에 있어서는 그 3分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費用에 있어서는 그 2分의 1이내로 한다.

第20條 (보고등) 保健福祉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所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指導・監督을 할 수 있다.

第21條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保健所・保健醫療院 또는 保健支所가 아니면 각각 保健所・保健醫療院 또는 保健支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2條 (醫療法에 대한 特例)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醫療院은 醫療法 第3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病院 또는 同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歯科醫院 또는 韓醫院으로 보고, 保健所 및 保健支所는 同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醫院・齒科醫院 또는 韓醫院으로 본다.

第23條 削除 (99·2·8)

第24條 (權限의 위임등) ①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保健所 및 保健支所의 業務中 保健福祉部長官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業務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醫療機關 기타 保健醫療 關聯機關・團體에게 委託하거나, 醫療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人에게 그 業務의 일부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醫療人에게 그 業務의 일부를 代行하게 한 경우에는 그 業務遂行에 소요되는 實費를 辨償할 수 있다.

第36編 保健・醫事 第1章 行政組織・通則 地역보건법시행령

있도록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인력등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훈련기간은 3주이상으로 한다.

2. 전문교육훈련은 보건소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직중인 전문인력등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훈련기간은 1주이상으로 한다.

제18조 (시설이용의 편의제공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99·8·7>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2.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 업무
3. 법 제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4. 법 제9조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
5. 법 제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법 제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第36編 保健・醫事 第1章 行政組織・通則 地域보건법시행령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외한다)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시행계획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1997년 2월 말 일까지로 한다.

제4조 (보건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건소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부 칙 <98·2·28 대령157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9·8·7 대령16526>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第3章 醫事・血液管理

●醫療法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全文改正 1973. 2. 16 法律第2533號
 改正 1975. 12. 31 法律第2862號
 1981. 4. 13 法律第3441號(認許可동의整備를 위한行政書士法등의一部改
 正法律)
 1981. 12. 31 法律第3504號
 1986. 5. 10 法律第3825號
 1987. 11. 28 法律第3948號
 1991. 12. 14 法律第4430號(農漁村等保健醫療를 위한特別措置法)
 1994. 1. 7 法律第4732號
 1995. 12. 29 法律第5101號(地域保健法)
 1997. 12.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
 備에 관한法律)
 1997. 12.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
 에 관한法律)
 1999. 9. 7 法律第6020號
 2000. 1. 12 法律第6157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民醫療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醫療의 適
 正을 期하여 國民의 健康을 保護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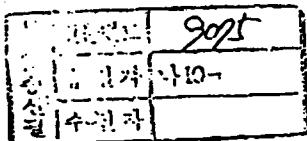
第2條 (醫療人) ①이 法에서 “醫療人”이라 함은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產師 및 看護師를 말한다. <改正 86. 5. 10, 87. 11. 28,
 97. 12. 13 法5454>

②醫療人은 그 種別에 따라 다음 각號의 任務를 遂行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向上
 을 圖謀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에 寄與함을 使命으로 한다. <改正 81. 12.
 31, 86. 5. 10, 87. 11. 28>

1. 醫師는 醫療와 保健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2. 齒科醫師는 齒科醫療 및 口腔保健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3. 韓醫師는 韓方醫療와 韓方保健指導에 종사함을 任務로 한다.
4. 助產師는 助產과 妊婦・解產婦・產褥婦 및 新生兒에 대한 保健과 養護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5. 看護師는 傷病者 또는 解產婦의 療養上의 看護 또는 診療의 補助 및 大統領
 令이 정하는 保健活動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추 119)

21세기 도전 · 창조 · 희망의 경기



지금

취급 몽상정숙

경 기 도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 / ☎ (033)249 - 4344 / FAX (033)249 - 2429
보건과 과장 박영숙 사무관 전세훈 담당자 김성태

<http://www.provin.kyonggi.kr>

문서번호 보건65550-11930

시행일자 2000.06.05 (5년)

공개여부 (공개)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선임		지 체	
접 수	일자 시간		
	번호	2264	
	처 리 과		61 22 97
	당 담·자		
	심사자	심사원	

제 목 보건소 한의사 배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조치 요청

- 보건65550-11248(2000.4.10)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호로 기 통보한바 있는 한의사회 회장단 간담회시 건의사항중 보건소 일용직 한의사 정규직화에 대하여 불임과 "보건소 한의사 배치 및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오니 아래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의사가 일용직이거나 미배치된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등 27개 보건소 해당 시장·군수께서는 불임의 "○○시·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표준안)"을 참조하여 동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공중보건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는 업무에 참고하여 필요시 동조례를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 또는 2001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한의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한의사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계약체결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서식

(1) 업무대행조례 제정사항

시 · 군명	조례명	조례제정일자	공포일자	비고
				조례1부 첨부

(2) 한방진료 업무대행계약 체결사항

시 · 군명	업무대행예산화보액	업무대행계약체결일	한의사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천원

2-1
"성공적인 정상화될 동일항한 첫걸음"

덧붙임 : 보건소 한의사 배치 및 관리운영방안 1부. 끝.

<사진 FAX & E-mail 전송>

경기도지

전경 보건복지국장 이재용



받는곳 : 너(보건위생과장), 머, 뷔(보건소장)

保健所 韓醫師 配置 及 管理運營 方案

保 健 課

保健所 韓醫師 配置 및 管理運營 方案

- 시·군 보건소 한의사 배치에 대한 반응이 좋으므로
금년도에 추가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한의사의 대우문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신분
도 계약직으로 하든지 의사에 걸 맞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의사 수요가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한사람씩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소요예산을 검토보고하기 바람.

※ 도지사님 지시사항(2000.5.13과 5.20 주례간부회의시)

□ 韓醫師 配置 現況

○ 시·군·구별

(단위 : 개소)

구 분	배 치 (31)	미 배 치 (8)
구설치 시지역	10 : 수원(1), 성남(3), 안양(2) 부천(2) 고양(2)	3 : 수원(2), 부천(소사)
일반 시 지역	10 : 의정부, 광명, 동두천, 안산, 파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1 : 구리
도농복합시지역	6 : 평택, 남양주, 용인, 파주, 이천, 김포	1 : 안성
군 지 역	5 : 여주, 화성, 광주, 포천, 양평	3 : 양주, 연천, 가평

※ 한의사 미배치 사유

- 한의사 1명이 순회진료(3) : 수원(2), 부천 소사구(원미구 한의사 진료)
- 2000.2. 이직으로 현재 모집공고중(1) : 안성
- 자체 예산 미 확보 (4) : 구리, 양주, 연천, 가평

○ 채용 구분별

(단위 : 명)

계	정규직	계약직	공중보건의사	일용직
31	1 (안산:의무5급)	1 (파천:나동급)	10 (평택외 9개시군)	19 (수원외 18개시)

□ 問 題 點

- 도 전체 보건소중 구리시 등 8개 보건소에 한의사가 미배치되어 한방진료 서비스 차질
- 한의사가 배치된 31개 보건소중 정규직(1), 계약직(1), 공중보건의(10)등 12명을 제외한 19개 보건소는 일용직으로 채용, 신분의 불안정 및 보수 (월 평균 150만원내외)가 낮아 평균 근무 기간이 7개월로 이직률이 높아 체계적인 한방진료 서비스 제공 곤란
- 현재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므로 한의사의 일반직 및 계약직 등으로의 정규직화는 당장은 곤란

□ 改 善 對 策

[장 기 대 책]

- 한의사의 정규직화 -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
- 남양주, 안성, 양주, 연천, 가평은 2001년에 공중보건한의사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
※ 현행 공중보건한의사 배치기준 : 도농복합시형태의 시, 군만 해당
- 대도시 및 일반시 지역까지 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시행규칙(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개정건의
※ 현행 최소 배치기준 :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에만 배치

[단 기 대 책]

- 한의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거나 배치가 안된 27개 보건소에 대해서는 한의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한방진료 실시 (시·군별로 조례제정) ⇒ 업무대행조례안(표준안) 별첨 6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24조(권한의 위임등) 제2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2항, 제3항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는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례〉

※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관한조례”를 97년 7.18 제정하여 전문과목(내과, 외과)을 전문의료인에게 업무대행 계약 체결하여 업무 수행중

□ 建 議

- 한의사가 일용직(19개소)이거나 미배치(8개소) 보건소 중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재정형편이 양호한 21개 보건소는 업무대행 소요예산을 시·군 자체 확보도록 조치
- 재정형편이 열악한 동두천, 오산, 안성, 양주, 연천, 가평군은 공중보건한의사 배치시까지 업무대행 소요예산의 50%를 차기 추경이후 도비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 연간 소요액 : 99,471천원 (33,157천원 X 6개소 = 198,942천원 X 50/100)

※ 2000년 소요예산(3월 분) : 24,868천원 (99,471천원 X 3개월 / 12)

□ 韓醫師 人件費 所要豫算 檢討

○ 연간 인건비 총소요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임계약직	비전임계약직	상용일용직
전체(27개소)	895,239	623,133	725,868
미배치시군 (8개소)	265,256	184,632	215,072

※ 미배치 보건소 : 수원(권선, 팔달), 부천(소사), 구리, 안성, 양주, 연천, 가평

○ 1인당 연간 인건비 소요판단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연 봉 액	연봉외 수당 등
전임계약직(나등급)	33,157	19,617	13,540
비전임 계약직	23,079	9,809	13,270
상 용 일용직	26,884		

- 연봉액 : 봉급, 수당(기말, 정근),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 가계안정비
- 연봉외 : 의료수당(65만원X12월), 가족수당(7만원X12월), 자녀학비보조수당(25만원X4회)
정액급식비(8만원X12월), 직급보조비(20만원X12월), 연가보상비(10일)
- 일용인부임 산출근거 : 18개 보건소 평균 일용인부임 94,000원 X 286일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비전임계약직의 경우 연봉한계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계약직 연봉한계액의 5할이하로 편성토록 규정

[사례]

○ 과천시 보건소 근무 전임계약직 한의사(권오희)

- 계약 체결일 : 1999.9.10
- 연간급여총액 : 32,000천 원
- 연 봉 액 : 19,617천 원
- 연 봉 외 : 12,383천 원

○ 일용직 한의사 1인당 1일 지급액 : 성남시 50,000원 - 부천시 100,650원

□ 參考資料

- | | |
|--|-----|
| 1. 도내 보건소 한의사 배치 현황 | 1부. |
| 2. 도내 보건소 한방진료 실태 | 1부. |
| 3. 도내 보건소 한의사 근무내역 | 1부. |
| 4. '99년도 보건소 환자진료실적(연인원) | 1부. |
| 5. 지역보건법 주요내용 발췌 | 1부. |
| 6. ○○시·군·구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에관한조례안(표준안) | 1부. |
| 7.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총계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내역 | 1부. |
| 8. 각 시·도 한방진료 실태 | 1부. |
| 9. 각 시·도 보건소 한의사 확보현황 | 1부. |

1. 도내 보건소 한의사 배치현황

보건소명	배 치 현 황						한의사 평 균 교체회수	1인당 급여액 (천원)
	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공중보 건의사	한의사회 또는 군부대 협조		
계	31	1	1	19	10	(4)	1-4회	7월 50-100
수원시(3개구) 순회진료	1			1			7월	68/일
성남시수정구	1			1			10월	50/일
중원구	1			1			6월	50/일
분당구	1			1			10월	50/일
의정부시	1			1				72/일
안양시만안구	1			1			6월	100/일
동안구	1			1			7월	62/일
부천시원미구	1			1			2월	100.6/일
소사구		원미구	에서진료					
오정구	1			1			2월	100/일
광명시	1			1				74/일
평택시	1			1				
동두천시	1			1				94/일
안산시	1	1						
고양시덕양구	1			1				66/일
일산구	1			1			2	66/일
과천시	1		1					
구리시					O			
남양주시	1			1				81.4/일
오산시	1			1			1	100/일
시흥시	1			1			1	100/일
군포시	1			1			3	70.5/일
의왕시	1			1			1	21월 95/일
하남시	1			1				61/일
용인시	1			1				81/일
파주시	1			1				
이천시	1			1				
안성시			공식				1	3월 71/일
김포시	1			1				
양주군					O			
여주군	1			1				
화성군	1			1				
광주군	1			1			1	9월 82/일
연천군					O			
포천군	1			1				
가평군					O			
양평군	1			1				

2. 도내 보건소 한방 진료 실태

보건소명	한의사 성명	직종	급여 (천원)	일일 환자수	진료인력	근무일	전화
제: 39개소	31명			20-60명	45명		2000.5.22. 현재
수원시 (3개구 순회)	양예인	자원봉사	68(일)	20	물 2 기타 1	'00. 2. 7	
성남시 수정구	홍인유	일용직	50(일)	35	기타 1	'00.1.3	0342)747-0961
성남시 중원구	김은경		50(일)	40	간 1	'99.6.1	0342)734-1639
성남시 분당구	인혜경		50(일)	25	간 1	'99.2.8	0342)707-2120
의정부시	이민정	"	72(일)	30	간 1	'99.4.1	0351) 872-1750
안양시 만안구	김관수	"	100(일)	100	간 1	'00.5.8	0343) 467-4472
안양시 동안구	김은희	"	62(일)	35~40		'99.7.23	0343) 320-3429
부천시 원미구	김상명	"	100.6 (일)	60	간 1	'99.5.6	032) 320-3409
부천시 소사구	원미구	에서 순	회진료	물 1			032) 341-2174
부천시 오정구	박민수	일용직	100(일)	30~35	물 1, 기타 1	'00.3.24	032) 320-3429
광명시	강애리	"	74(일)	20	간 2	'99.8.2	02) 680-6556
평택시	임중화	공보의	800(월)	20	조 1	'99.4.19	0333) 654-5223
동두천시	손희선	일용직	94(일)	40	치위 1	'99.1118.	0351) 860-2305
안산시	권재세	의무5급		60	공공 1	'98.1.5	0345) 411-5677
고양시 덕양구	조정의	일용직	66(일)	30	공공 2	'99.6.15	0344) 966-2971
고양시 일산구	이주은	일용직	66(일)	30	기타 1	'00.4.7	0344) 975-0368
과천시	권오희	전문직 나동급	34,000 (연)	30~40	조 1	'99.9.10	02) 3677-2788
구리시	한의사	회 협조	진료(주1회)	물 1	매주 수요일		0346) 550-2556

보건소명	한의사 성명	직종	급여 (천원)	일일 환자수	보조 인력	근무일	전화
남양주시	한정수	일용직	81.4(일)	50	간 1	'98.12.20	0346) 590-2559
오산시	김혜진	"	100(일)	30	조 1	'99.7.31	0339) 370-3556
시흥시	이원규	"	100(일)	25	간 1	'00.1.3	032) 694-9418
군포시	정호윤	"	70.5(일)	40	간 1	'98.12.16	0343) 429-4000
의왕시	윤현숙	"	95(일)	30	간 1	'99.6.14	0343) 455-6328
하남시	이성민	"	61(일)	35	조 1	'99.8.17	0347) 793-0470
용인시	정원재	공보의	1,000 (월)	30	조 1	'99.4.19	0335) 329-2559
파주시	이성환	"	800(월)	20	조 1	"	0348) 911-5902
이천시	장제찬	"	800(월)	20	기타 2	"	0336) 638-4245
안성시		일용직	모집	광고중	간 1		0334) 675-3258
김포시	장재혁	공보의	800(월)	20	간 1	'00.4.17	0341) 998-4001
양주군		한의사	회협조	진료		(2주1회)	0351) 820-2553
여주군	정선용	공보의	1,012.3 (월)	25~30	물 1 조 1	'99.4.19	0337) 682-6881
화성군	정진용	"	1,000 (월)	30	물 1 조 1	'98.4.20	0339) 353-7506
광주군	조상현	"	800(월)	30	조 1	'00.4.17	0347) 760-2551
연천군		군부대	한의사	협조	기타 1	(4월 20 이후 재개)	
연천군	조남훈	공보의	1,000 (월)	15	물 1	'99.4.19	0355) 530-8559
가평군		한의사	회협조	진료	물 1	(2주 1회)	0356) 582-2488
양평군	염기복		800(월)	20	기타 1	'00.4.17	0338) 770-2551

□ 총 39개 보건소 : 일용직 19개소, 정규직 2개소, 공보의 10개소,
자원봉사 1개소, 한의사등 협조 4개소, 기타(순회진료) 3(권선, 팔달, 소사)

3. 도내 보건소 한의사 근무내역

〈정규직〉

보건소명	근무자 내역	비고
계	2개 보건소	
안산시	지방의무5급 : 권재세('98.1~현재)	'96.8부터 근무(일용직)
과천시	전문계약직 나동급 : 권오희(99.9~현재)	

〈공중보건의〉

보건소명	근무자 내역	비고
계	10개 보건소	
평택시	공중보건한의사 : 임중화('99.4.19배치)	
용인시	공중보건한의사 : 정원재('99.4.19배치)	
파주시	공중보건한의사 : 이성환('99.4.19배치)	
이천시	공중보건한의사 : 장재찬('99.4.19배치)	
김포시	공중보건한의사 : 장재혁(2000.4.17배치)	
여주군	공중보건한의사 : 정선용('99.4.19배치)	
화성군	공중보건한의사 : 정진용('98.4.20배치)	
광주군	공중보건한의사 : 조상현(2000.4.17배치)	
포천군	공중보건한의사 : 조남훈('99.4.17배치)	
양평군	공중보건한의사 : 염기복(2000.4.17.배치)	

※ 공중보건의사 배치근거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

〈일용직〉

보건소명	근무자 내역	이직회수
계: 20개소		
성남시 수정구	임혜경('99.2~'99.12), 홍인유(2000.1~현재)	1회
성남시 중원구	김선영('99.3~'99.9), 김은경('99.9~현재)	1회
성남시 분당구	천미나('99.2~'99.11), 홍인유('99.11~현재)	1회
의정부시	이민정('99.4~현재)	
안양시 만안구	강연석('96.12~'97.12), 민주홍('98.1~'99.7) 김경미('99.7~'99.10), 김우진('99.11~2000.3) 김진수(2000.8~현재)	4회
안양시 동안구	권영민('96.12~'99.7), 김은희('99.7~현재)	1회
부천시 원미구	이효정('99.2~'99.4), 김상영('99.5~현재)	1회
부천시 오정구	이희정('99.2~'99.4), 박민수(2000.3~현재)	1회
광명시	강애리('99.7~현재)	
동두천시	손희선('99.11~현재)	
고양시 덕양구	조정익('99.7~현재)	
고양시 일산구	김동열('99.7~'99.9), 허필('99.10~2000.4.4) 이주온(2000.4.7~현재)	2회
남양주시	한정수('98.12~현재)	
오산시	최원희('99.7~'99.7), 김혜진('99.8~현재)	1회
시흥시	전창환('99.2~'99.12), 이원규(2000.3~현재)	1회
군포시	백은경('96.8~'97.1), 이승현('97.2~'98.1) 유인식('98.2~'98.11), 정호윤('98.12~현재)	3회
의왕시	이희정('98.2~'99.11), 윤현숙('99.10~현재)	1회
하남시	이상민('99.2~현재)	
안성시	김은숙('99.11~2000.1), 현상권(2000.1~2000.2)	1회 모집공고중
광주군	김완태('99.6~2000.3), 2005.현재 공보의 근무증	1회

※ 근무기간 : 최단 20일 ~ 1년 7월 (평균 7월)

5. 지역보건법 주요내용 발췌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 ：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간사에 관한 사항
-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조직)

- ： 보건소의 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다.

※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 ①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24조(권한의 위임등)

-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9조(보건소의 조직기준)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조직기준을 정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보건소의 조직은 당해 시·군·구의 인구규모, 지역특성, 보건의료수요등을 감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③ 보건소의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등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3호 및 제14호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현 또는 검사업무
-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법 제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③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전문인력등의 배치)

-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최소배치기준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문인력등을 그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6. 00 시·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표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시장·군수는 보건소의 업무 중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일반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정신과·한방과 및 시장·군수가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단위 : 명)

직종별 구분	특별시의 구 상의 시의 구 및 인구30만명 이상의 시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이 인구 30만 명미만의 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30만 인구 이상의 시	30만 인구 미만의 시			
의사	3	3	2	2	1	6
치과의사	1	1	1	1	1	1
한의사	-	-	-	1	1	1
조산사	(1)	(1)	(1)	(1)	(1)	(1)
간호사	18	14	10	14	10	23
약사	3	2	1	1	1	2
임상병리사	4	4	3	4	2	4
방사선사	2	2	2	2	2	3
물리치료사	1	1	1	1	1	2
치과위생사	1	1	1	1	1	1
영양사	1	1	1	1	1	2
간호조무사	(2)	(2)	(2)	(2)	(2)	(6)
의무기록사	-	-	-	-	-	1
위생사 · 위생시험사	(3)	(3)	(2)	(2)	(2)	(6)
정신보건 전문요원	1	1	1	1	1	1
정보처리기 사 · 정보처 리기능사	(1)	(1)	(1)	(1)	(1)	(1)
응급구조사	-	-	-	-	(1)	1

비 고 : 1.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의사 및 치과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3.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로서의 한의사가 배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인력의 범위안에서 간호사에 할당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중 ()로 표시된 기준은 당해 시 · 군 · 구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7. 영양사는 인구 5만명의 군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각 시·도 한방진료 실태

시·도명	보건소 한방진료 실태(개소수)			'99년도 한방진료실적(명)
	계	실시	미실시	
계	243	183	60	2,101,968
서울특별시	25	20	5	259,675
부산광역시	16	5	11	49,490
대구광역시	8	6	2	8,093
인천광역시	10	8	2	260,412
대전광역시	5	5		49,143
광주광역시	5	5		131,451
울산광역시	5	1	4	1,254
경기도	39	39		549,442
강원도	18	16	2	156,351
충청북도	12	11	1	46,379
충청남도	15	10	5	109,818
전라북도	14	11	3	81,089
전라남도	22	22		126,051
경상북도	25	11	14	126,684
경상남도	20	11	9	112,559
제주도	4	2	2	34,077

각 시·도 보건소 한의사 확보현황

(2000.5.20현재)

시·도명	계	정 규 직	계약 직	공 보 의	일 용 직	자원봉사 또는 한의사회 협조	일용직 한의사 보수 (최소-최대)
계	180	6	22	75	32	45	
서울특별시	20			8		12	
부산광역시	5				5		60-80천원/일
대구광역시	6					6 (주1~2회)	
인천광역시	8	1	1	2	4		76-125천원/일
대전광역시	3			1		2	95-150천원/일
광주광역시	5			5			
울산광역시	1					1 (주1회)	
경기도	35	1	1	10	19	4	50-100천원/일
강원도	16	3	1	10		2	
충청북도	11	1		6		4	
충청남도	10			7	2	1	99-110천원/일
전라북도	11			9		2 (주2회)	
전라남도	24		1	9		14	80천원/일
경상북도	11			1	10		
경상남도	13			2	10		1
제주도	3			1	2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정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3호의 보건소 업무를 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의거 보건소의 업무중 의료인에게 진료업무 대행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
- 나. 진료업무 대행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2항)
- 다. 진료업무 대행시 업무대행경비 지급의 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항)
- 라. 업무대행자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3조)

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
- 의료법 제2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54,000천원

- 보건소 진료대행 요구 과목 : 1개 (한방과)
- 기본급 : 한의사1명 × 3,500천원 × 12월 = 42,000천원
- 성과급 : 한의사1명 × 3,000천원 × 4월(분기지급) = 12,000천원

사전예고결과 : 2000. 7. 3 ~ 7.20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

기타참고사항

- 보건소 한의사 배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조치요청(경기도보건65550-11930, 2000.6.5)